

國內 RI 使用現況

('86.1~3 월말 현재)

1. 회원의 가입 및 변경

가.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이용기관 현황

('86. 3 월말 현재)

| 기관별 | | 종류 | 방사성 동위원소 | 방사선 발생장치 | 계 | 기관 수 |
|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|
| 가 기 관 | 관 | 매업전문업체 | 11 | 1 | 12 (1) | 11 |
| | 관 | 매업자체사용업체 | 8 | - | 8 **(2) | 6 |
| | 관 | 비파괴검사전문업체 | 8 | 8 | 16 *(8) | 8 |
| | 관 | 공공기관 | 17 | 16 | 33 *(6) | 27 |
| | 관 | 연구기관 | 9 | 5 | 14 *(4) | 10 |
| | 관 | 교육기관 | 14 | 46 | 60 *(5) | 55 |
| | 관 | 의료기관 | 81 | 15 | 96 *(15) | 81 |
| | 관 | 기타일반산업체 | 93 | 94 | 187 *(24) | 163 |
| | 관 | 소계 | 241 | 185 | 426 *(65) | 361 |
| 신 고 기 관 | 관 | 교육및연구기관 | 5 | - | 5 (1) | 4 |
| | 관 | 기타일반산업체 | 89 | - | 89 (5) | 84 |
| | 관 | 소계 | 94 | | 94 (6) | 88 |
| 총 계 | | | 335 | 185 | 520 *(71) | 449 |

(주) * () 내는 동일기관에서 방사성동위원소와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는 기관 수임

** () 내는 비파괴검사 전문업체로서 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기관수임.

나.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사용허가(신고) 변경기관

('86. 1~3 월말 현재)

| 번호 | 기관명 | 대표자 성명 | 본사주소 | | 변경내용 | 변경일자 | 비고 |
|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|--|---|----------|----|
| | | | 사용장소(사업소) | | | | |
| 1 | 연합철강공업(주) | 정재덕 | 서울시 종로구 당주동 160번지 번호사회관 5-8호 부산직할시남구 감만동 588-1 | | 방사성동위원소핵종· 수량증가 | '86.1.27 | 허가 |
| 2 | 풍산금속공업(주) | 이영세 | 서울시 중구 충무로3가 60-1 경북 월성군 안강읍 두류리 931, 산대리222 | | 대표자 성명 변경 X-선발생장치 종류· 대수증가 방사성동위원소수량감 소 | '86.1.10 | " |

| | | | | | | |
|----|---------------|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|
| 3 | 연세의대영동세브란스 병원 | 김영명 |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6-17 | 방사성동위원소수량증가 | '86. 1. 22 | 허가 |
| 4 | 서울대병원 | 이영균 |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28번지 (핵의학과, 동위원소실) | 방사성동위원소 핵종·수량 증가 | '86. 1. 10 | " |
| 5 | 현대중전기(주) | 김종규 | 경남 울산시 중구 일산동 337번지 | | '86. 2. 10 | " |
| 6 | 유양원자공업(주) | 김석주 |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37-10 | X-선발생장치 종류·대수 증가 | '86. 2. 10 | " |
| 7 | 가톨릭의대부속대전성모병원 | 김수환 | 충남 대전시 중구 대흥동 520-2 | 대표자 성명 변경 | '86. 2. 12 | " |
| 8 | (주) 부경사 | 오영진 | 서울시 중구 충무로 4가 126-1 | 방사성동위원소핵종·수량 증가 | '86. 3. 5 | " |
| 9 | 아남산업(주) | 김향수 | 서울시 성동구 화양동 151-22 | 방사성동위원소핵종·수량증가 | '86. 2. 20 | " |
| 10 | 가톨릭의대부속성가병원 | 김현욱 |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10번지 경기도 부천시 소사동 1번지 (동위원소실) | 방사성동위원소수량증가 및 감소 | '86. 2. 20 | " |
| 11 | 서울대학교농과대학 | 류순호 | 경기도 수원시 서둔동 103 (농화학관RI실험실) | 대표자 성명 변경 | '86. 2. 20 | " |
| 12 | 부산주공(주) | 송영찬 | 부산시 북구 학장동 715 | 사용시설변경 | '86. 2. 21 | " |
| 13 | 대한중석(주) | 김용수 | 경북 달성군 가창면 용계동 304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구래리 (상동광업소) | 대표자 성명 변경 | '86. 2. 14 | 신고 |
| 14 | 한국전력보수(주) | 한 훈 |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87 | 대표자 성명 변경 X-선 발생장치종류·대수증가 | '86. 2. 26 | 허가 |
| 15 | 성분도병원 | 이신숙 | 부산시 동구 초량동31-3 | 방사성동위원소수량증가 | '86. 3. 4 | " |
| 16 | 마산고려병원 | 조운해 | 경남 마산시 합성동50 | 방사성동위원소 핵종·수량증가 | '86. 1. 23 | " |

다.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신규 사용허가(신고) 기관

(’86. 1 ~ 3 월 말현재)

| 번호 | 기관명 | 대표자성명 | 본사주소 | | 허가내용 | 사용목적 | 허가일자 | 비고 |
|----|----------|------------|--|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|
| | | | 사용장소(사업소) | | | | | |
| 1 | 삼아알미늄(주) | 한상구 | 경기도 안양시 박달동 111-2 | | (밀봉선원) Fe-55:100mCi×1 Cm-244:500mCi×1 | 알미늄박의 두께 측정 | '86. 1. 29 | 허가 |
| 2 | 금성전선(주) | 문 박 |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120번지/경기도 시흥군 군포읍 당정리 200번지 | | (밀봉선원) Ir-192:200Ci×1 | 철 및 비철금속의 방사선투과검사 | '86. 2. 5 | " |
| 3 | 서울광혜병원 | 이중석 |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7-7 | | (개봉선원) 2군: 3mCi 3군: 16,990mCi 4군: 300mCi | 환자진단, 치료및임상연구 | '86. 2. 15 | " |
| 4 | 삼성코닝(주) | 신훈철 |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신리 472 | | (X-선발생장치) 60KVP 100mA×1set | 무기재료시료의구조 분석용 방사선 투과검사 | '86. 2. | " |
| 5 | 삼성전관(주) | 정재은 김정배 | 서울시 중구 순화동 7번지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신리 575번지 | | (X-선발생장치) 60KVP 100mA×1set | 각종 분말시료의 구조분석용 방사선 투과 검사 | '86. 2. 24 | " |

| | | | | | | | |
|----|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|
| 6 | 금오공과대학 | 김신배 | 경북 구미시 신평동 188 | (X-선발생장치) 50KVP 50mA×1set | 물질의 결정구조 해석을 위한 최적 실험용 | '86. 3. 10 | 허가 |
| 7 | 동아대학교공과대학 | 오세욱 | 부산 사하구 하단동 840번지 | (X-선발생장치) 250KVP 5mA×1set 60KVP 50mA×2set | 각종금속의 방사선 투과 검사 및 금속의 정성, 적량, 분석 | '86. 3. 10 | " |
| 8 | 단국대학교치과대학 | 최승재 | 충남 천안시 안서동 산 29 | (X-선발생장치) 60KVP 100mA×1set | 치과금속시료의성질분석을 위한 실험 | '86. 3. 14 | " |
| 9 | 범양식품(주) | 이정순 | 대구 서구비산동2028-1 충남 대덕군 신탄진읍 문평리 140 | (밀봉선원) Am-241:100mCi | 각종can제품의 Level 측정 | '86. 3. 14 | 신고 |
| 10 | (주) 일 화 | 홍성표 |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505/충북 청원군 북일면 초정리 5 | (밀봉선원) Am-241 : 100mCi | " | " | " |

2. 정부수탁업무의 지정 내용

가. 수탁업무의 주요규정

제 1 조(목적) 이 규정은 원자력법 제1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3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 방사성동위원소 협회(이하 “방사성협회”라 한다)에 위탁하는 업무(이하 “수탁업무”라 한다)의 종류 및 범위를 정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5 조(추천업무 관련 품목)

추천업무 대상품목은 무역거래법 시행령 제 1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거래법 이의 원자력법에 의한 품목별 수출 및 수입제한 내용을 통합 고시한 품목을 말한다.

제 6 조(추천대상자의 범위)

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수출입 추천 대상자(이하 “대상자”라 한다)는 “특별법에 의한 수출입 제한 내용의 통합고시 중 원자력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 의한 수입요령의 수입추천 대상자를 말한다. 다만, 핵연료 물질 및 핵원료 물질의 수입대상자는 제외한다.

제 7 조(추천업무 취급요령) 추천업무의 취급요령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민원서류 접수
2. 일반서식 검토(기재사항, 수입자 및 실수요자, 첨부서류 등)
3. 대상자 검토 확인
 - 가.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여부
 - 나.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합격여부(개봉선원에 한함)
 - 다.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규정 승인 여부

라.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의 선임신고 여부

4. 수입대상품목 검토확인

가. 수입대상 품목이 방사성 협회장 추천대상품목 여부

나. 허가내용(종류 및 수량) 확인 등

제 8 조(위탁기관의 권한 및 의무) 방사성협회는 법과 “특별법에 의한 수출입 제한 내용의 통합고시” 및 이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에 대하여는 방사성협회의 책임하에서 그 권한 및 의무를 행사한다.

나. 수탁기관 지정 근거

- (1) 원자력법 제 1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03조 제 2 호의 규정에 의거 수탁기관으로 지정됨
- (2) 원자력법 제 1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04조 제 3 항 및 제 311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처 장관으로부터 수탁기관 지정 및 업무규정 승인 (1985. 12. 18)
- (3) 과학기술처장관으로부터 위탁업무 규정을 승인 받아 관보에 공고 (1985. 12. 21. 과학기술처 공고 제 85-120호)

다. 수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징수에 관한 규정

- 원자력법 신설 제111조(권한의 위탁) 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과학기술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당해 원자력 관계 사업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- 지정수탁업무 규정 제19조(비용의 징수) ① 제 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이들 대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법에 “비용 부담 징수”의 규정의 발효되기 전까지는 방사성협회 이사회의 결정으로 가름할 수 있다.